#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배준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859

발의연월일: 2022. 6. 10.

발 의 자:배준영·양금희·구자근

정우택 • 이태규 • 조명희

김용판·최춘식·이 용

강대식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법인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여 세율을 차등적용하고 있으며, 3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하여 25%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의 '2022 대한민국 조세(2022. 4.)'에 따르면,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OECD 평균 2.7%보다 0. 7%p 높은 수준임. 또한 최근 다른 국가들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흐름을 감안한다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낮추어 국제적 추세에 맞출 필요가 있음.

이에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여 법인세 최고세율을 25%에서 22%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려는 것임(안 제55조제1 항).

#### 법률 제 호

##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과세표준	세율
2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10
2억원 초과	2천만원 + (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
200억원 이하	100분의 20)
200억원 초과	39억8천만원 + 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
	22)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세율에 관한 적용례)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
제55조(세율) ① 내국법인의 각
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
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
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
계산한 금액(제55조의2에 따른
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
세액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
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·상생
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
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
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
다. 이하 "산출세액"이라 한다)
을 그 세액으로 한다.
과세표준 세율

과세표준	<u>세율</u>
2억원	과세표준의 100분의 10
<u>이하</u>	<u> </u>
<u> 2억원</u>	2천만원 + (2억원을 초과하는
<u> 초과</u>	
200억원	급액의
이하	<u>100분의 20)</u>
200억원	
<u> 초과</u>	39억8천만원 + (200억원을
<u>3천억원</u>	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)
이하	
3천억원	655억8천만원 + (3천억원을
<u> 초과</u>	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)

제55조(세율) ①

안

개

정

과세표준	세율
<u>2억원</u> <u>이하</u>	<u>과세표준의 100분의 10</u>
2억원   초과   200억원   이하	2천만원 + (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)
<u>200억원</u> <u>초과</u>	39억8천만원 + 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)

② (생 략)

② (현행과 같음)